

아시아교육연구 20권 1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1, pp. 47-70.

<https://doi.org/10.15753/aje.2019.03.20.1.47>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형화 및 영향요인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김은석(金殷奭)**

장미수(張味秀)***

논문 요약

최근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신뢰성과 체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일선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이 사안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에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2017년도 학교정보공시 자료 중 연간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1건 이상이며 1가지 이상 처분이 이루어진 1,017개 고등학교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안처리 유형화를 위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고,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자치위원회 특성, 학교폭력 사안특성)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고등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처리 방식이 가해학생 처벌형, 가해학생 교육형, 보호 및 선도교육형, 피해 학생 보호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자치위원회 특성 중 연간 심의건수는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 구성 비율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특성은 전체 사안 대비 신체적 폭행의 비율과 사이버 폭력의 비율만이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 양상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영향 요인 검증 등을 통해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학교폭력,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 가해 유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잠재프로파일분석

* 본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에듀데이터서비스(EduData Service System, EDSS)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2018년도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음.

** 제1저자,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조교수, eskim@daegu.ac.kr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박사과정, mindfulmisu@ewhain.net

1. 서론

학교폭력 문제는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2012년 이후 정부에서는 몇 차례의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수가 2012년도 약 32만명(8.5%)에서 2017년에는 약 3만명(0.8%)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교육부, 2017), 비슷한 시기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4년도 약 1만 9천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약 2만 4천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몇 년간 학교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증가하여 2017년도에 재심 158건, 행정심판 146건으로, 2016년도 재심 85건, 행정심판 43건 대비 약 2-3배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18.02.04.). 즉, 자치위원회에서 처리된 결과에 불복하여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신청하거나, 재심 결과 역시 불복하며 자치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치위원회가 피해자와 가해자, 교육 현장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문제에서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지금보다 교육적이고 회복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과 학계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김광수, 장사형, 2017; 윤태현, 2017; 이현정, 2017; 장사형, 김광수, 2016; 정이근, 2016; 조성범, 2017; 한유경, 이주연, 박주형, 2013). 일부 연구에서는 인력 구성이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전문적인 사안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김광수, 장사형, 2017; 이창배, 2016; 조성범, 2017),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교 본래의 교육적 공간의 기능을 상실하고 가해학생을 향한 징벌적 처분 및 피해학생 보호에만 집중하는 소극적인 모습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윤태현, 2017; 장사형, 김광수, 2016; 정이근, 2016).

보다 전문적인 사안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자치위원회에서 사안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다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진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을 확인하는 실태 연구나(김현욱, 안세근, 2013; 박종운, 김삼곤, 2003; 손재환, 이대형, 이현진, 유춘자, 정진선, 김수현, 박소영, 2013; 조주영, 오인수, 2014) 사안처리 과정에서 가해 및 피해 학부모와 교원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김광수, 장사형, 2017; 최명희, 김진숙, 2016; 한유경 외, 2013, 황정훈, 2014)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던 것과 대조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사안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승현, 정제영, 강태훈, 김무영(2014)의 연구에서 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가 학교 봉사(19.0%),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8.8%), 출석정지(17.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반적인 양상을 보여주는지는 하나 각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처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형화를 통해 자치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주로 사용하는 개입 양상을 살펴보고, 사안처리 하위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함으로써 각 사안처리가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보다 전문적인 사안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면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고등학교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은 몇 가지로 구분되며, 그 형태는 각각 어떠한가?

둘째, 자치위원회 특성 및 학교폭력 사안 특성 중 잠재프로파일의 결정 요인으로 유의한 변수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 실태 및 개입 양상

학교폭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 및 피해 집단, 미경험집단으로 분류된다(노연경, 이은수, 이현정, 홍세희, 2017; 이승연, 오인수, 이주연, 2014; 한유경, 이희숙, 김성식, 이윤희, 2016). 이 중 가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이들의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권현용, 김현미(2009)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담사례를 통해 이들의 개인적 요인, 학교 관련 요인, 가족 관련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개입 방법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사례를 통하여 확인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충동성, 반사회성 행동(공격성), 분노, 절망감(장래희망), 비행, 음주, 성, 흡연, 가출 등이 포함되었다. 학교 관련 요인에서는 학교생활과 교사와의 관계, 또래 집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관련 요인으로는 폭력 노출, 빈곤, 가족 문제, 부모의 양육 태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사회환경적 요인에서는 멀티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일(2013)의 연구에서도 가해 집단의 특성으로 비슷한 점들이 발견되었

는데, 특히, 개인 수준의 변수(우울, 분노, 공부압력, 공격행동)가 집단 유형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부모 애착은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에 있어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둔 접근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심리적 요소 및 환경(가정, 학교)에 대한 접근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해 집단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한유경 외, 2016), 이들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이 중요하다. 심재휘와 이기혜(2016)의 연구에서는 이전 가해 경험과 현재 가해 경험 간 관계에 대해 Wee클래스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유경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 노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경험 집단이 미경험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즉, 학교와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학생들이 인식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발생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적 개입이나 선도적 개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주영과 이아라(2015)의 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자들은 상담 회기가 짧고 사후 관리가 부족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상담이 처벌의 수단이 될 뿐 교육적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 개입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각 개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일선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담당하는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이들은 위촉된 이후 2년의 임기 내에서 활동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자치위원회에 사안처리의 핵심적 기능을 부여하였으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최근 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의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광수, 장사형, 2017; 김희균, 2016; 이현정, 2017; 장사형, 김광수, 2016; 한유경 외, 2013).

이창배(2016)는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이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치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학부모 대표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둘러싼

법적·교육적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사안의 당사자들이 친밀한 일상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김광수, 장사형, 2017). 이에, 교감이나 책임교사 등의 교원이 위원회를 주도하며 사안처리의 윤곽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역시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대상 연수만으로는 이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외부 위원을 위촉하려고 노력하나 단위학교에서 이들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만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장미현, 2014).

이와 같은 자치위원회 구성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안처리 과정에서도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느 정도로 취할지에 대한 결정 및 처분을 14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문제는 심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위원회가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개별 사안의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원들은 업무의 과중함 및 소송에 대한 두려움의 여파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처하거나 예방 및 교육보다는 주로 가해학생 처분 위주로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엄동섭, 2012; 한유경 외, 2013). 이와 관련하여 가해학생 선도교육과 관련된 기관에 소속된 현장전문가들은 사안처리의 신속성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이승현 외, 2014).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어 이들을 선도하려는 노력보다는 처벌하고 문제를 제거하려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할 위험성이 더욱 크다. 특히, 2012년도 법령 개정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예방이나 선도적 조치보다는 처벌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거나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윤태현, 2017; 정이근, 2016; 조영일, 2013).

이처럼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 운영의 체계성에 대한 의문은 사안처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대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김광수, 장사형, 2017; 홍지영, 유정이, 2013), 처분 이후 재심청구나 관련 행정 소송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김정연, 2017; 한유경 외, 2013). 따라서 자치위원회 운영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요구되며,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학교폭력 사안 특성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일반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된다.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은 교육부(201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세부기준에서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를 항목별로 각각 0-4점으로 평정하는데,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아질수록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수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점수 합산 결과 1-3점은 서면 사과(1호), 4-6점은 학교 봉사(3호) 처분이 이루어지며 교내에서 수행된다. 이와 달리 합산 점수가 7-9점인 경우 내려지는 사회봉사(4호) 처분은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판정되는 경우 10-12점은 출석 정지(6호), 13-15점은 학급 교체(7호), 16-20점은 전학(8호), 16-20점은 퇴학(9호) 처분이 내려져 교육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접근을 취한다. 이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사안의 특성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나 특별 교육(5호)을 병과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그 밖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 교체와 같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 피해학생에 대한 개입의 경우 조치가 결정되더라도 수용 여부는 피해학생의 선택의 영역에 놓인다.

그러나 현재의 사안처리 방법은 각 항목을 평정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여 대체로 단위학교에서 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안처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부가적 판단요소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이현정, 2017).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제시한 세부 기준은 사안처리 방법을 징계의 수위에 따라서만 분류하고 있어, 선도과 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이러한 조치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승현 외(2014)의 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중 자치위원회의 선도 및 교육 조치를 받고 반성했다는 응답은 55.3%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집단에서 84.6%, 중학교 집단에서 67.4%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입의 목적에 따라 사안처리 방법을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재환 외(2013)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과 개입을 위해서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대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특히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이 보다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면서 대상이 되는 사안의 범주 역시 광범위해짐에 따라 이러한 흐름에 맞는 적절한 개입방법을 폭넓게 개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명예훼손·모욕, 협박, 약취·유인,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의 9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가 해당 유형의 가해에 가장 효과적인 개

입방법을 선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분류는 가해의 다양한 종류를 나열한 것에 불과할 뿐 상위 유형에 대한 이해는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분류의 실질적인 효과성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최근 손재환 외(2013)의 연구에서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 유형을 분류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를 심각한 수준의 성적 가해, 인터넷을 통한 가해, 약한 수준의 성적 수치심 가해, 따돌림 가해, 언어놀림 가해, 신체적 폭행 가해, 괴롭힘 가해 등 7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에 따라 접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전문가 평가에 기반한 개념도에 근거하여 성과 관련한 가해를 제외한 9가지 가해 유형을 신체적 폭행, 언어놀림,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5가지 상위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의 유형에 따라 사안처리 양상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에듀데이터로부터 제공 받은 학교정보공시 자료 중 2017년도에 전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¹⁾를 활용하였다. 에듀데이터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 유관기관 등에 축적되어 있는 교육 관련 데이터를 수집·연계·가공하여 학술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자료는 전체 학교 중 10% 비율로 층화 추출된 표본 자료이며, 총 1499교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개별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의 수가 1건 이상 있으며 이에 대해 1가지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1017개교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단위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이 아닌 학교 단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학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고 63.6%, 특성화고 21.7%, 특목고 7.7%, 자율고 6.9%였으며, 남녀공학 62.6%, 여학교 19.4%, 남학교 17.9%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는 학교정보공시의 설문 문항을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각 변수명과 구체적인 측정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1) 2017년도 학교정보공시 자료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자료는 2016년도의 운영 결과임.

〈표 1〉 분석에 활용한 변수 설명

구분	변수	변수 내용	측정 단위	
분류 변수	사안처리 현황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학생 일시보호, 피해학생 치료 및 요양, 피해학생 학급교체	전체 사안 처리 결과 대비 해당 조치의 실행 비율
		가해학생 중재적 개입	가해학생 서면사과(1호),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가해학생 교육적 개입	가해학생 학교봉사(3호), 가해학생 사회봉사(4호),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가해학생 처벌적 개입	가해학생 출석정지(6호), 가해학생 학급교체(7호), 가해학생 전학(8호), 가해학생 퇴학(9호)	
영향 변수	자치위원회 특성	전문가 구성 비율	자치위원회 전체 인원 대비 법조인, 경찰, 의료인 비율	
		심의건수	학교별 연간 심의 건수	1학기 2 학기의 건수 합산
학교폭력 특성	신체적 폭행	상해, 폭행, 감금	전체 심의 건수 중 특정 가해 유형의 비율	
	언어놀림	명예훼손·모욕		
	괴롭힘	협박, 악취유인,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따돌림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사이버 따돌림		

먼저, 잠재 프로파일을 분류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 현황을 지표변수로 사용하였다. 사안처리는 크게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로 분류되는데,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가 있으며,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이 있다. 이와 같은 사안처리 방법들을 대상 학생 및 개입 목적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조치(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학생 일시보호, 피해학생 치료 및 요양, 피해학생 학급교체), 가해학생 중재적 개입(가해학생 서면사과,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교육적 개입(가해학생 학교봉사, 가해학생 사회봉사,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처벌적 개입(가해학생 출석정지, 가해학생 학급교체, 가해학생 전학, 가해학생 퇴학)의 네 가지로 재분류하였다. 각 변수는 단위학교에서 연간 이루어졌던 사안처리 건수 중 특정한 개입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의 비율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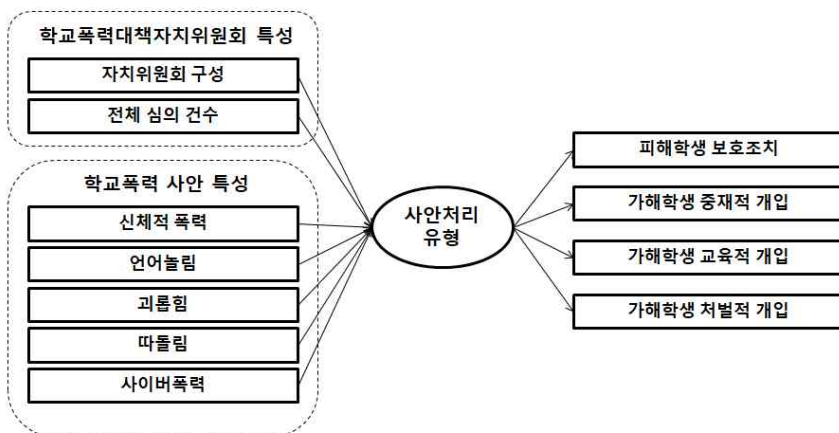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안처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치위원회의 특성 및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자치위원회의 특성으로는 전문가 구성 비율과 심의 건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전문가 구성 비율은 자치위원회의 전체 인원 대비 법조인, 경찰, 의료인의 비율을 산출하여 변수로 사용하였고, 전체 심의 건수는 각 자치위원회의 연간 심의 건수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학교폭력 사안

의 특성은 자치위원회에서 각 유형의 학교폭력이 연간 얼마나 심의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손재환 외 (2013)의 연구에서 현장 전문가들이 학교폭력 가해 유형을 분류한 방식을 참고하여 이를 다시 신체적 폭행(상해, 폭행, 감금), 언어놀림(명예훼손·모욕), 괴롭힘(협박, 약취·유인,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따돌림),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사이버 따돌림)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각 가해 유형이 연간 개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전체 사례 중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였는지를 변수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살피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 지표변수만을 이용하여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고, 다음으로 영향요인들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Nylund-Gibson, & Masyn, 2016). 분석에는 Mplus 7.0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전형적인 하위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피는 방법으로,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왔던 군집분석과 유사하지만 집단 분류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통계치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점이 있다 (Michael & Graham, 2008; Nylund et al., 2007; Vermunt & Magidson, 2002).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일선 고등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안처리를 하고 있는지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피고자 하며, 더불어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사안처리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



[그림 1] 연구모형

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적 기준으로 정보 지수인 AIC, BIC와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Entropy값, k개 집단을 가진 모형과 k-1개 집단을 가진 모형을 비교하는 조정된 차이검증(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LMR-LRT) 및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BLRT)을 사용하였다. AIC와 BIC는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LMR-LRT와 BLRT는 p값이 유의하면 k개의 잠재집단을 가진 모형이 채택되고 p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 잠재집단을 가진 모형이 채택된다(Lo et al., 2001; McLachlan & Peel, 2000; Tein et al., 2013). Entropy값은 하나의 잠재 계층에 속할 확률이 커질수록 값이 증가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더 정확함을 의미하는데, 0.8 이상이 좋은 분류라고 할 수 있다(Muthen, 2004). 이와 같은 통계적 기준 이외에도 실질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전체 표본 대비 잠재 집단의 최소 비율을 5%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Jung & Wickrama, 2008),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준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투입한 조건모형을 검증하여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자치위원회 특성(자치위원회 구성, 전체 심의 건수), 학교폭력 사안 특성(신체적 폭력, 언어놀림,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 폭력)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자치위원회에서 범조인, 경찰,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3.9%로 9-10명당 한 명꼴로 전문가가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일선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접수되었던 심의 건수는 평균 4.3건이었으며, 각 학교에 접수된 학교폭력 가해 유형의 비율은 신체적 폭행이 6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버폭력 9.8%, 언어놀림 8.2%, 괴롭힘 7.4%, 따돌림 2.8%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전체 사안처리 중 32.6%를 차지하였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중재적 개입과 교육적 개입이 각각 28%와 29.6%로 뒤를 이었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적 개입이 전체 사안처리 현황의 9.8%를 차지하였다.

〈표 2〉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N=1017)

	1	2-1	2-2	2-3	3	4	5-1	5-2	5-3	5-4	5-5
1	1										
2-1	-.45**	1									
2-2	-.51**	-.35**	1								
2-3	-.16**	-.27**	-.19**	1							
3	-.03	-.04	.09**	-.02	1						
4	-.06**	.03	-.01	.08*	-.02	1					
5-1	-.04	-.09**	.14**	-.00	.04	.10**	1				
5-2	.04	.06*	-.08**	-.03	.02	.01	-.38**	1			
5-3	-.04	.02	-.06*	.13**	-.02	.07*	-.33**	-.07*	1		
5-4	-.04	.05	.03	-.08*	-.02	-.07*	-.26**	-.02	-.07*	1	
5-5	-.01	.08*	-.06	-.01	-.04	-.06	-.47**	-.11**	-.09**	-.07*	1
평균	.326	.280	.296	.098	.139	4.315	.677	.082	.04	.028	.098
표준 편차	.244	.228	.231	.144	.049	4.304	.348	.188	.174	.130	.227

1. 사안처리 중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비율, 2. 사안처리 중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비율(2-1. 중재적 개입, 2-2. 교육적 개입, 2-3. 처벌적 개입), 3. 자치위원회 전문가 구성 비율, 4. 자치위원회 연간 심의 건수, 5. 연간 심의 건수 중 특정 가해 유형의 비율(5-1. 신체적 폭행, 5-2. 언어놀림, 5-3. 괴롭힘, 5-4. 따돌림, 5-5. 사이버폭력)

* $p < .05$, ** $p < .01$, *** $p < .001$

상관분석 결과, 자치위원회의 전문가 구성 비율은 사안처리 중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의 비율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치위원회의 연간 심의 건수는 사안처리 중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적 개입의 비율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가 이루어진 학교폭력 가해유형 중 신체적 폭행의 비율은 가해학생에 대한 중재적 개입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가해유형 중 언어놀림의 비율은 가해학생에 대한 중재적 개입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교육적 개입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유형 중 괴롭힘의 비율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처벌적 개입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가해유형 중 따돌림의 비율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적 개입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가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율은 가해학생에 대한 중재적 개입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잠재 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유형	정보 지수		분류의 질 Entropy	모형 비교		잠재 프로파일 분류율 (%)				
	AIC	BIC		LMR -LRT	BL RT	1	2	3	4	5
2	-1644.408	-1580.388	.964	.000	.000	93.6	6.4			
3	-2063.969	-1975.325	.943	.000	.000	6.6	7.7	85.7		
4	-2492.926	-2379.660	.944	.030	.000	4.4	7.6	81.6	6.4	
5	-2821.643	-2683.754	.825	.008	.000	7.1	42.6	6.4	4.4	39.5

2. 사안처리 유형화 분석 결과

1) 잠재프로파일 모형 선정

다양한 통계적 기준을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사안처리 유형을 몇 개의 잠재 프로파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정보 지수의 경우,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와 BIC가 모두 감소하고 있어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많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분류의 질은 잠재 프로파일 수의 증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4개 집단에서 5개 집단으로 증가하였을 때 분류의 질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모형 비교 검증 결과, 잠재 프로파일 수가 증가하여도 LMR-LRT와 BLRT가 계속 유의하게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어떤 모형이 좋은 모형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적 기준과 별도로, 잠재 프로파일 분류율을 살펴보았을 때 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와 5개 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각 한 집단이 4.4%의 분류율을 보여 최소 비율 기준치인 5%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 & Wickrama, 2008). 이상의 통계적 기준과 함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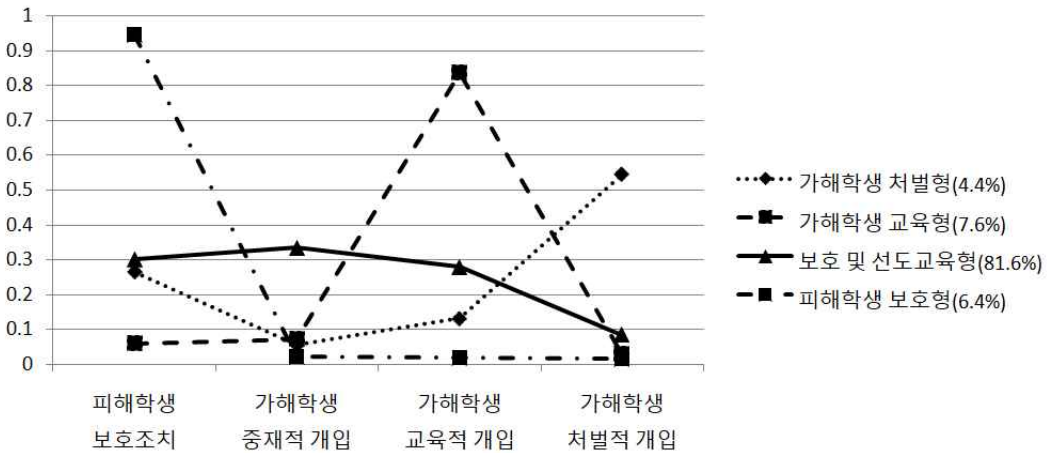
2) 사안처리 프로파일 형태와 명명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사안처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의 형태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각 프로파일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먼저, 4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81.6%)을 차지하는 유형3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중재적 개입 및 교육적 개입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유형으로, 개별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다양한 사안처리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호 및 선도·교육형으로 명명하였다. 보호 및 선도·교육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은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유

〈표 4〉 잠재 프로파일별 사안처리의 평균과 표준오차

	유형1: 가해학생 처벌형 (n=45, 4.4%)		유형2: 가해학생 교육형 (n=77, 7.6%)		유형3: 보호 및 선도·교육형 (n=830, 81.6%)		유형4: 피해학생 보호형 (n=65, 6.4%)	
	M	SE	M	SE	M	SE	M	SE
피해학생 보호조치	0.266	0.038	0.062	0.018	0.301	0.007	0.944	0.014
가해학생 중재적 개입	0.056	0.025	0.073	0.021	0.334	0.008	0.023	0.007
가해학생 교육적 개입	0.132	0.037	0.836	0.038	0.279	0.007	0.018	0.006
가해학생 처벌적 개입	0.545	0.068	0.030	0.012	0.085	0.005	0.016	0.007



[그림 2] 사안처리 프로파일 형태

형1은 가장 작은 4.4%를 차지하였다. 유형1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적 개입이 전체 사안처리 방법 중 약 54.5%를 차지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적 개입을 중심으로 사안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중재적 개입이나 교육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적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가해학생 처벌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2는 전체 유형의 7.6%를 차지하며, 각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처리의 약 83.6% 정도를 가해자 교육에 치중하는 반면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중재적 개입 및 처벌적 개입의 비중은 낮아 이를 가해학생 교육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유형의 6.4%를 차지하는 유형4는 각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안처리 결과 중 약 94.4%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 밖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의 비중은 매우 낮아 이를 피해학생 보호형으로 명명하였다.

3. 사안처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대한 자치위원회 특성 요인과 학교폭력 사안 특성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는 준거 유형에 비해 다른 유형에 속할 확률에 특정 독립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를 변수별로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특성 중 전문가 구성 비율의 영향력은 모든 집단 간의 비교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자치위원회의 연간 심의 건수는 특정한 유형에 비해 다른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간 심의 건수가 감소할수록 자치위원회 대부분이 속한 보호 및 선도·교육형에 비해 나머지 유형(가해학생 처벌형, 가해학생 교육형, 피해학생 보호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한편, 연간 심의건

<표 5> 사안처리 잠재 프로파일의 영향 요인 검증 결과 (N=1017)

영역	변수	준거 유형: 보호 및 선도·교육형					
		가해학생 처벌형		가해학생 교육형		피해학생 보호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위원회 특성	전문가 구성	-3.33	3.89	5.28	2.77	-1.17	2.56
	연간 심의건수	-0.26**	0.09	-0.65***	0.13	-0.23**	0.08
사안 특성	신체적 폭행	-0.40	0.80	-0.07	0.55	-1.59***	0.45
	언어놀림	-0.68	1.19	-0.61	1.18	-0.61	0.67
	괴롭힘	0.69	0.99	-0.79	0.89	-1.71	0.97
	따돌림	-3.01	2.31	0.92	0.80	-2.32	1.74
	사이버폭력	-0.55	0.90	-0.69	0.79	-1.29*	0.63

영역	변수	준거 유형: 가해학생 처벌형				준거 유형: 가해학생 교육형	
		가해학생 교육형		피해학생 보호형		피해학생 보호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위원회 특성	전문가 구성	8.61	4.50	2.16	4.46	-6.45	3.51
	연간 심의건수	-0.39*	0.16	0.04	0.12	0.43**	0.15
사안 특성	신체적 폭행	0.34	0.89	-1.18	0.84	-1.52*	0.63
	언어놀림	0.06	1.64	0.06	1.31	0.00	1.26
	괴롭힘	-1.47	1.20	-2.40	1.33	-0.93	1.22
	따돌림	3.92	2.37	0.69	2.81	-3.24	1.82
	사이버폭력	-0.14	1.12	-0.74	1.02	-0.60	0.92

* $p < .05$, ** $p < .01$, *** $p < .001$

수가 증가할수록 가해학생 교육형에 비해 가해학생 처벌형이나 피해학생 보호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사안 중 언어놀림, 괴롭힘, 따돌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집단 간 비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전체 사안 중에서 신체적 폭행 사건이 많을수록 피해학생 보호형보다 보호 및 선도·교육형이나 가해학생 교육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전체 사안 중에서 사이버폭력 사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피해학생 개입에 집중하는 피해학생 보호형보다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을 병행하는 보호 및 선도·교육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학교 현장 및 연구 장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의 체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하여(김광수, 장사형, 2017; 이현정, 2017; 장사형, 김광수, 2016; 한재경, 2018) 단위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의 양상을 탐색적으로 살피고 사안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및 실천적 쟁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은 통계적 측면과 해석적 측면을 고려하여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은 잠재 프로파일의 형태에 따라 가해학생 처벌형(4.4%), 가해학생 교육형(7.6%), 보호 및 선도·교육형(81.6%), 피해학생 보호형(6.4%)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의 특성을 보면 가해학생 처벌형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적 개입(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을 위주로 하고, 가해학생 교육형은 가해자 교육(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도는 심리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편, 피해학생 보호형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영양, 학급교체)에 대한 개입을 위주로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적 조치의 비중은 매우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호 및 선도·교육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기반한 사안처리 방식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안처리가 과도하게 처벌에만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는 달리 최근 현장에서 교육적 접근을 비롯한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부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부재한 채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또는 처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변수가 사안처리에서의 차이를 야기하는지를 추가로 검증하였다.

둘째, 자치위원회의 서로 다른 사안처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한 결과, 자치위원회 구성 중 전문가 비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에 따라 사안처리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 것(김광수, 장사형, 2017; 이현정, 2017)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자치위원회에 포함된 전문가 비율이 공통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전문가 비율에 따른 자치위원회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위원회 구성 중 법조인, 경찰, 의료인은 약 13.9%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9-10명당 1명꼴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자치위원회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위학교마다 단 한 명의 전문가가 사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소수의 전문가 구성으로 인해 전문성이 발휘될 여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1명의 전문가의 의견이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김광수와 장사형(2017)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부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기에 만약 각 학교에 소속된 한 명의 전문가가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역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위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소화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기능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고 법률적 전문가와 의학적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확보하여 심의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가 구성 비율과는 달리 자치위원회에서 연간 처리하는 심의 건수는 사안처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던 학교의 경우 연 평균 약 4.3건의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학기 중 약 2건 정도의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학교폭력 사안이 자주 발생함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심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다른 유형에 비해 보호 및 선도·교육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심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가해학생 교육형에 비해 가해학생 처벌형이나 피해학생 보호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보호와 치료(상담, 보호, 치료요양 및 학급교체)를 위주로 하는 행정적 조치나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징계 및 처벌(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위주의 징벌적 조치를 중심으로 사안처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봉사, 교육, 심리치료와 같은 교육적 활동을 통하여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선도적 조치는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학교폭력 신고가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에서의 토로를 뒷받침한다(한유경 외, 2013).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의 문제나 과반수 이상 포함되는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내부 교원이 사안처리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장사형, 김광수 2016; 조성범 2017). 그런데 이들은 사안조사부터 처리 결과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맡는 과정에서 압도되고 소진되어 사안처리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은석, 서운하, 이지연, 2018). 특히 해당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건수가 많을수록 이러한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효, 박효정, 정미경, 2007). 최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부족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교육적 조치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안처리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자치위원회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문제점 역시 전문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학교폭력 가해 유형에 따라 주요한 사안처리 방식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이현정, 2017).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를 살펴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신고된 사안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을 때 판정 점수가 높아지며 그 결과 중재적 개입보다는 교육적 또는 처벌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즉, 본 연구에서 신체적 폭력의 경우 피해학생 보호형에 비해 보호 및 선도·교육형이나 가해학생 교육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던 것은 신체적 폭력의 경우 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높은 판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손재환 외(2013)의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신체적 폭행 가해를 심각한 가해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 폭행이 있었던 경우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손재환 외(2013)의 연구에서 사이버폭력은 상대적으로 심각도가 낮은 가해 유형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 사이버폭력의 비율이 높을 때 피해학생 보호형보다 보호 및 선도·교육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최근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중 사이버폭력의 비율은 자치위원회의 중재적 개입과 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단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오프라인상에서의 학교폭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사이버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상의 학교폭력의 감소분이 사이버폭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쿠키뉴스, 2017.07.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이버폭력에 대해 강화된 개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명성, 전파성, 신속성 등의 복합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처리방안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강경래, 2015; 정여주, 두경희, 2014).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의 사안처리 양상을 개별 사안 단위가 아니라 학교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사안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 단위의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치위원회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이 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심의가 이루어진 개별 사안의 특성과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누적된 데이터에 기반한 메뉴얼을 제작함으로써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건 이상의 심의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해 1가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만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약한 정도의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현정(2017)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자치위원회에 사안이 접수되더라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서 0점을 받은 경우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 가해가 발생하였고 사안이 접수된 이상 최소한 경고와 같은 기본적인 개입을 실행하고 이를 사안처리 결과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흥미로운 것이라 기대된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 과정의 신뢰성과 체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사안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이해는 미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 양상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와 같이 사안처리 과정에 전문가 참여 비율이 지극히 적고 심의 건수에 따라 교육적 개입이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된다면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학급 수준에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인식 공유와 사안에 대한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할 때 가해행동의 감소와 방어행동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박주형, 정성수, 2012; 송경희, 이승연, 2018; Konold et al., 2014). 이와 마찬가지로 사안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로운 방식으로 운영될 때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사후적 효과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도 더욱 증진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자치위원회 운영의 대안적 운영 방안을 제안해보자면 각 학교가 소속된 교육지원청에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안처리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각 학교에서 매번 전문가를 섭외하여 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현행과 같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공정한 운영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능이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될 경우 위와 같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래(2015). 사이버블링의 이해와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28(2), 1-29.
- 교육부(201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안 행정 예고.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4002&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에서 2018.04.04. 인출
- 교육부(2017).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765&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 에서 2018.04.04. 인출
- 권현용, 김현미(2009).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2(1), 1-12.
- 김광수, 장사형(2017). 학교폭력 기구 및 조치과정의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3), 919-930.
- 김은석, 서윤하, 이지연(2018). 초등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도 연구. **교육문제연구**, 31(2), 1-24.
- 김정연(2017). 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8(4), 149-175.
- 김현욱, 안세근(2013). 학교폭력 가해자 심리와 가해자 유형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5), 19-40.
- 김희균(2016).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9(1), 61-94.
- 노언경, 이은수, 이현정, 홍세희(2017). 다층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한 중학생의 학교폭력 집단 분류와 개인 및 학교요인 검증. **조사연구**, 18(2), 67-98.
- 박종운, 김삼곤(2003).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폭력 유형 분석 및 대안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0(1), 181-197.
- 박종효, 박효정, 정미경(2007).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스트레스 연구-발생건수, 심각성 지각과 대처 효능감의 관련성. **한국교육**, 34(2), 3-25.
- 박주형, 정성수(2012).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의 영향 요인 탐색. **교육행정학회지**, 30(3), 1-19.
- 손재환, 이대형, 이현진, 유춘자, 정진선, 김수현, 박소영(2013). 학교폭력 가·피해 유형분류를 위한

- 현장 전문가 대상 개념도(concept mapping)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1(2), 317-342.
- 송경희, 이승연(2018). 초등학생의 도덕 추론과 또래괴롭힘 방어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2), 83-103.
- 심재휘, 이기혜(2016). Wee 클래스 운영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22(2), 255-281.
- 엄동섭(2012). 학교폭력에 따른 교사 등의 민사책임: 집단따돌림(괴롭힘)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7(2), 59-91.
- 윤태현(2017).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발전방안 연구. **소년보호연구**, 30(2), 89-123.
- 이승연, 오인수, 이주연(2014).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 피해, 가해-피해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학연구**, 21(5), 391-416.
- 이승현, 정제영, 강태훈, 김무영(2014).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효과성 분석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66.
- 이종길(2008).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 및 대처 방안 연구. **윤리연구**, 69, 305-334.
- 이주영, 이아라(2015). 학교폭력 가해자 대상 상담에서의 상담자 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849-880.
- 이창배(20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선방안: 학교장과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비교. **한국범죄심리연구**, 12(4), 237-256.
- 이현정(2017).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국헌법연구**, 28(3), 214-251
- 장미현(20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장사형, 김광수(2016). 학교폭력문제 대응에 대한 교육적 고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60, 141-164.
- 정여주, 두경희(201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원인, 결과, 개입에 대한 연구 동향 - 예방상담학적 관점에서. **청소년학연구**, 21(8), 373-406.
- 정이근(2016).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병과 가능성과 적용상 문제점 검토. **동북아법연구**, 10(2), 349-370.
- 조성범(20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해부한다. **우리교육**, 26-55.
- 조영일(2013).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67-87.
- 조주영, 오인수(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유형변화 및 정서문제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5(4), 301-323.
- 최명희, 김진숙(2016).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교사경험: 질적 메타종합 연구. **상담학연구**, 17(5), 441-464.

- 쿠키뉴스(2017.07.11). 학교폭력도 이젠 '사이버 폭력'으로 진화... 대책 마련 '시급'.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01500071>
 &wlog_tag3=daum 에서 2018.06.11. 인출
- 파이낸셜뉴스(2018.02.04.). 서울 시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배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3958269> 에서 2018.04.06. 인출
- 한유경, 이주연, 박주형(2013). 학교폭력 대책 강화에 따른 단위학교 사안처리과정에서의 갈등 분석. **교육과학연구**, 44(4), 73-97.
- 한유경, 이희숙, 김성식, 이윤희(2016). 학교폭력 경험 양상의 변동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7(1), 145-168.
- 한재경(2018). 학교폭력예방방법상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공공사회연구**, 8(1), 131-161.
- 홍지영, 유정이(2013).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 학부모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1(1), 107-145.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07.
- Konold, T., Cornell, D., Huang, F., Meyer, P., Lacey, A., Nekvasil, E., Heilbrun A., Shukla, K. (2014). Multilevel multi-informant structure of the authoritative school climate survey.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9(3), 238-255.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Wiley.
- Michael, T., & Graham, G. S. (2008). Using latent class analysis to identify aggressors and victims of peer harassment. *Aggressive Behavior*, 34(2), 203-213.
- Muthe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Eds.)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e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Tein, J. Y., Coxe, S., & Cham, H.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4) 640-657.
- Vermunt, J. K., & Magidson, J. (2002). *Latent cluster analysis*. In J. A. Hagenars & A. L.

McCutcheon (Eds.),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pp. 89–106).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논문접수 2018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8년 9월 7일 / 2차 심사 2019년 2월 28일 / 게재승인 2019년 3월 8일
- * 김은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심리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 E-mail: eskim@daegu.ac.kr
- * 장미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동대학원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 E-mail: mindfulmisu@ewhain.net

Abstract

Classification of Case Intervention on School Violence and Influencing Factors*

Kim, Eun-Seok**

Chang, Mi-su***

As the recent objections to the handling of school violence have increased, people questioned the reliability and systematizes of the School Violence Autonomous Committee(SVAC). This study examined to identify how SVAC's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cases and find influential factors on its decisions. 1,017 high schools having at least one school violence deliberation and disposal from EduDATA's '2017 School Information Open Data' were selected. To classify school violence and identify affecting factors (characteristics of SVAC or school violence) to potential profile,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reveal four types of cases that are handled by SCAC of high school perpetrators punishment, perpetrators education, protection-education and victim protection. Second, although the number of annual deliberations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SVAC was found to influence the type classification, the expert composition ratio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violence showed that only the proportion of physical assault and cyber violence influences type classification. Conclusions show SVAC case management process and the influential factors by empirical base validity. These findings can enrich the discussion about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SVAC.

Key words: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Autonomous Committee, Types of School Violence, Case Intervention on School Violence, Latent Profile Analysis

*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of EduData Service System(EDSS) of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KERIS) and revised the presented manuscript at the 2018 Annual Conference of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Doctoral students,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